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9.1.13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1. 13(화)	담당부서	국고국 국유재산과
담당과장	정병기(2150-5150)	담당자	임재정 사무관(2150-5153)

제목: 2009.1.13일자 조선일보의 「국·공유지 무단 점유 4년동안 5배 늘었다」 제하의 기사 관련

1. 관련 기사에 대하여

- '지난 4년동안 국유지 무단점유가 5배 늘었다'는 점(1면, 5면)에 대하여
 - 기획재정부는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(04~06년) 하였으며, 그 결과 상당수의 국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

< 국유 잡종재산 전수실태조사 결과(06.12월말 현재) >

구분	필지수		면적(천㎡)	
	수량	비율(%)	수량	비율(%)
- 이용중인 재산	380,374	55.5	834,133	53.8
· 공용·공공용	209,911	30.6	412,574	26.6
· 유·무상대부	170,463	24.9	421,559	27.2
- 무단점유	153,593	22.4	148,835	9.6
- 유휴재산	151,896	22.1	566,801	36.6
합계	685,863	100	1,549,768	100

- 이에 무단점유재산, 유휴재산 등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된 재산의 관리를 지자체에서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수탁기관으로 전환하였음(06~08년)

< 자산관리공사의 관리재산 중 무단점유 현황 >

연도	관리필지수(a)	무단점유(b)	비율(b/a)
2004	4,546	164	3.6
2005	20,770	191	0.9
2006	77,394	438	0.5
2007	95,163	19,019	19.9
08.7월말	161,539	29,774	18.4

- 그 결과,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의 경우 관리필지 대비 무단점유 비율이 급증(5배 증가: 04년 3.6% → 08년 18.4%)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전체 국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필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

개별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관리조치 소홀(5면)에 대하여

- '당산동 소재 B교회의 무단점유'에 대하여 작년 초에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나,
 -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전인 06.3월 영등포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·납입조치하였고, 자산관리공사도 인수후 부과·납입조치함
- 기획재정부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의 실효성확보 및 대부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음

2. 그간 지적된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

지자체 위임관리의 한계

- 인력부족,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결여
- 국가와 지자체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
 - 개발사업 시행시 공유지보다 국유지를 우선 편입·처분
 - 재정수입을 위해 활용 측면보다는 매각·처분 위주로 관리
 - 무단점유자의 지역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 등

유휴행정재산(1)을 장기간 방치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등 관리청 소관재산 관리상의 문제

체계적인 전문관리조직의 불비

- 기획재정부의 인력부족, 현안업무 과중으로 정책수립, 조정·감독 등 총괄기능 수행 곤란
- 잡종재산의 분산관리로 인해 효율적 관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곤란

1) 외교통상부 등 7개 관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(07.3월), 대장가액 5,493억원의 재산이 유휴상태로인 것으로 확인

3. 「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대책」 등 추진

□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령을 개정(09.1.8 국회통과)하고, 「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계획」을 마련하여 추진중임

① 총괄청(기획재정부)의 유휴재산 관리·감독기능 강화

- 총괄청에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권을 부여 (09.1.8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, 공포 6월후 시행),
- 조달청을 활용하여 전체 국유재산의 현황에 대한 확인·점검 및 감사 근거 마련(08.12.3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, 09.1.6 시행)
- 이에 따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유휴행정재산, 재산관리기관의 부실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(09년 상반기중)

② 국유재산관리체계의 선진화 추진

- 지자체, 자산관리공사 등 분산관리에서 전문관리기관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체계의 개선 추진

③ 중소기업, 서민지원 등 국유지의 공익적 기능 강화

-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의 매각·정리 등을 통해 동 재원으로 지방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비축·매입하여 장기 저가·무상 임대로 지원(08.12.18. 기획재정부의 09년 대통령 업무보고)
- 개별 재산의 특성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시장친화적 현장 중심의 국유재산 매각·임대제도로 개선하여 전체 국토의 활용도 제고

④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의 공표

- 현재 국유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공표 (개정 국유재산법 제76조, 10.1.1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표)

□ (향후 일정) 관리체계 개선 및 재산활용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 통하여 금년 상반기중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,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

□ (기대 효과) 국유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, 전체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본연의 공공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기획재정부 대변인